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대전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고단4606 판결업무방해,도주,모욕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2고단4606 업무방해, 도주,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창희(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3. 00:35경부터 2012. 11.3. 00:45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 편의점 내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이 담배를 구입하러 온 피고인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연령확인이 불가한 나라사랑 카드를 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이 확인이 불가하여 담배를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이 년아 서비스가 이거 밖에 안 되냐 내가 본사에 전화를 해야겠다."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런 쓰레기 같은 년아, 니가 이 따위로 하니까 이런 구멍가게나 하고 살지 이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약 1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11. 3. 00:5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 위E외 1명이 위 C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며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하자 갑자기 피해자 E에게 인상을 쓰며 "이런 경찰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새끼들 씹할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 01:12경 대전 서구 F지구대에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Col 보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경찰 개새끼들아!" 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2012. 11. 3. 00: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업무방해와 모욕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대전 서구 F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위 E이 뒷문을 열고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자 수갑을 찬 양손으로 위E을 밀치고 그대로 달아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1. G,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3. 00:47경 대전 서구 D 편의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 외 1명의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이런 씨팔년이 내가 나이를 먹었는데도 담배를 안팔아, 이씹할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의 피해자 C이 2013. 1.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봉길